



“청년실업 중소기업이 해결합니다”

심각한 청년층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와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우리조합은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청년 미취업자를 준비된 골판지포장산업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 미충원 일자리의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난 완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.

1. 연수생 및 연수 중소기업 모집 · 선정

연수생 자격요건은

- ▶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
- ▶ 당해연도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졸업예정자
- ▶ 산학협력에 의해 특수교과과정을 개설하고 학기중 현장연수에 참여할 예정인 자

- ▶ 전역예정 군장기 복무자로 직업 보도교육에 참여중인 자
- ▶ 연체액 3천만원이하인 신용불량자중 만 35세미만 미취업재실업자

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수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▶ 병역특례자(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)
- ▶ 실업급여 수급자,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채용(정규직, 임시직,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)되어 당해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또는 당해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자
- ▶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(실업계고?이공계 대학 재학생), 산업교육 진흥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재(현)장실습 참가 종료 이후에는 지원 가능)
- ▶ 실업계고, 대학의 자연과학 등의 학교 교과과정에 현장실습이 학점(또는 단위수)으로 편성되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경우

연수 중소기업 자격요건은

- ▶ 중소기업(예 : 골판지조합 회원사)
- ▶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부가통신업,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, 자연과학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▶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

연수 중소기업 선정방법은

- ▶ 채용의사를 표시한 중소기업과 연수 희망자(기간의 새(취업, 연수희망)가 합치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
- ▶ 기타 연수 중소기업 선정은 선착순 또는 아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 보조사업자인 우리조합에서 선정한다.
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수출유망 중소기업, CE·UL·JIS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기업, NT?EM 등 인증제품 생산기업 등 국가기관 등에서 1차 검증을 받은 기업
- ▶ 특정 연수생에게 여러 중소기업이 채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 취업여부, 연수 여부 등은 연수 희망자가 최종 결정한다.
- ▶ 많은 행정력 소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수 중소기업 선정 권한의 일부를 주사업자인 기협중앙회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2. 집합교육 실시

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설

- ▶ 골판지조합은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기존 이론 중심의 과정이 아닌,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개설한다.

집합교육의 알선·실시

- ▶ 연수생과 중소기업간 채용수요가 매칭된 경우 우선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.
- ▶ 연수생과 중소기업 채용수요가 매칭되지는 않았으나, 현장 연수를 실시할 중소기업이 선정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한다.
 - 이 경우 집합 교육기간 동안 연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, 연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알선을 적극 지원한다.
- ▶ 요구수준 등의 차이로 연수 희망자가 현장 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.
 - 연수생이 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지 못한 규모가 총사업규모(5,500명)의 50% 미만인 경우 연수생에 집합교육만을 우선 실시한다.
 - 이 경우 집합교육 과정은 중소기업청 및 주사업자인 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채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설한다.
 - 집합교육기간 동안 중소기업청, 주사업자인 기협중앙회, 보조사업자인 골판지조합, 교육기관은 현장 연수를 실시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알선해야 하며, 연수 중소기업이 발굴된 경우 즉시 현장연수를 실시한다.
- ▶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.

교육기간은

- ▶ 집합교육 기간은 1월 이상(80시간 이상)을 원칙으로 한다.
- ▶ 집합교육 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다만, 연수생과 교육기관, 연수생과 연수 중소기업 등의 사정에 따라 1주 총 20시간 이상(주 3일이

상) 40시간 이내(주 5일)의 범위에서 연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, 양자간 합의에 따라 연수일자 및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.

집합교육 연수수당은

- ▶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월 30 만원을 지급한다.
- ▶ 지급방법은 주사업자인 기협중앙회 또는 보조사업자인 골판지조합이 교육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- ▶ 중도 해지 등과 같이 개별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- ▶ 연수협약서 등에 휴일 및 법정공휴일로 정한 날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석일수에 산입하여 연수수당을 지급한다.

3. 현장연수

현장 연수과정 개설은

- ▶ 현장 연수과정은 중소기업(예 : 골판지조합 회원사 중 신청업체)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연수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연수원, 협력기업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현장연수 기간은

- ▶ 현장연수 기간은 2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정부의 총 지원기간(4~5개월)에서 집합교육 참여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연수생과 연수 중소기업 등간 합의에 따른다.
- ▶ 연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▶ 연수중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

경우 연수 약정이 해지되고, 요양기간이 1월 이하일 때는 약정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현장연수 장소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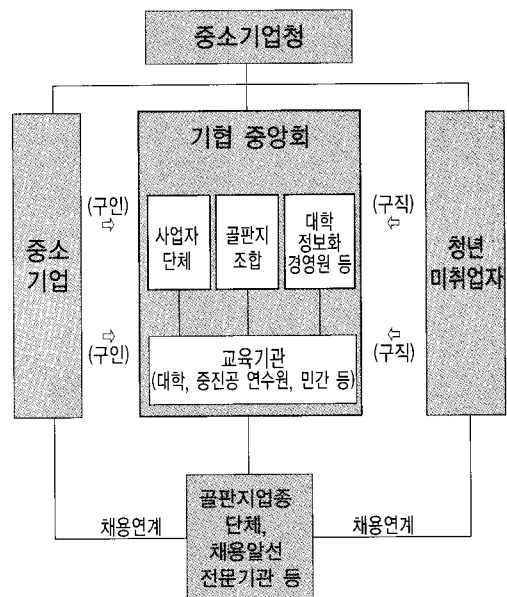
- ▶ 연수장소는 연수협약서의 연수 중소기업의 산업현장(생산시설 또는 업무장소 등)으로 한다.
- 다만, 현장 연수의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 또는 협력기업의 연수원 등에서 1월이내 교육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현장연수로 간주한다.

4. 기타

연수생의 법적 성격은

- ▶ 연수협약서에서 정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는다.

〈추진체계〉



- ▶ 즉,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.

연수생의 중도해지 금지 및 연수기관 변경

- ▶ 연수생은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 중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할 수 없다.
- ▶ 집합교육의 경우 '8-4-2 연수기관 변경사유'가 발

생한 경우 교육개시 후 1주일 이내 본 사업의 다른 집합교육 참여를 위해 중도해지 할 수 있다.

- ▶ 현장연수의 경우 '8-4-2 연수기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' 교육개시 후 1주 이내 본 사업의 다른 현장연수 참여를 조건으로 중도해지 할 수 있다.
- ▶ 중도해지가 이유 없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연수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2004년도 골판지포장산업 청년패키지사업 안내

보조사업자명	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		
연락 및 접수 (전화, 팩스, 이메일)	주소 : (137-871)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33 한신리빙타워 301호 전화 : 02-3474-7124~8, 팩스 : 02-3474-8895 e-mail : kcca@kcca.or.kr		
모집(교육)분야	주소 : (137-871)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33 한신리빙타워 301호 전화 : 02-3474-7124~8, 팩스 : 02-3474-8895 e-mail : kcca@kcca.or.kr		
지 역	생산직 (골판지포장 일반과정)	공무직 (골판지설비 관리과정)	생산관리직 (골판지포장 생산기술과정)
모집기간(월일까지)	2004. 5. 2 ~ 2004. 6. 15		